

전국총학생회칙 개정 공포

전국총학생회칙 제6장 53조 및 시행세칙 제6장 41조에 의거 하여
2025년 11월 07일에 개정한 회칙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아 래---

전 국 총 학 생 회 칙

전 국 총 학 생 회 칙

제1장 총 칙

제2장 전국총학생회의 기구와 권한

제3장 재 정

제4장 선 거

제5장 탄핵 및 징계

제6장 회칙 개정 등

시 행 세 칙

제1장 총 칙

제2장 전국총학생회의 기구와 권한

제3장 재 정

제4장 산 하 기 구

제5장 선 거 관 리

제6장 회칙개정

전국총학생회 선거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2장 선거 운동

제3장 징계 및 의결

제4장 보궐 선거

제5장 지역총학생회장 선거

제6장 단과대학학생회장 선거

전국총학생회칙

전 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국총학생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로부터 회원 각인이 평등한 가운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의 이행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사고임을 인식하고, 대학은 진리 탐구의 도량으로서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학문 탐구 정신 아래 21c 첨단 정보화 시대에 합당한 보편적인 대학 문화의 창달과 민주사회 정의의 실현과 민족의 통일에 기여함을 학생회 활동의 근본이념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1조(명칭)

본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국총학생회(이하 전국총학생회 또는 전총)이라 한다.

2조(목적)

전국총학생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하고 창조적인 학문 탐구와 진보적인 대학 문화 건설을 그 목적으로 한다.

3조(위치)

전국총학생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 본부에 두고 각 지역대학에 지역총학생회를 둔다.

4조(회원의 자격)

전국총학생회의 회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등록 중인 재학생으로 한다.

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전국총학생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② 전국총학생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학생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본 예산 승인 후 기납부된 학생회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할 수 없다.)
- ③ 전국총학생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발전을 저해하거나 질서를 교란한 회원에 대하여 중앙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그 권리를 정지할 수 있다.
- ④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통신상에 다수인들이 보는 곳에 알리거나 인신공격성 글, 상행위 등을 유포하는 학우는 중앙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줄 수 있다.

6조(학사 행정 참여)

① 전국총학생회는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사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 가. 학생의 자치 활동에 관한 사항
- 나. 학생권익과 관련된 사항
- 다. 학교의 중요정책의 수립과 집행
- 라. 기타 전국총학생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

② 전국총학생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총학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 당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조(구성)

전국총학생회는 전체학생대표자대회, 중앙상임위원회, 중앙집행국, 지역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를 둔다.

제2장 전국총학생회의 기구와 권한

제1절 전체학생대표자대회

8조(지위)

전체학생대표자 대회(이하 전학대회)는 전국총학생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9조(구성)

① 전학대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단, 전학대회 전 명단 미등록 시 총원에서 제외한다.

가. 전국총학생회장, 수석부총학생회장, 지역부총학생회장, 교무부총학생회장, 실무부총학생회장

나. 서울지역총학생회장, 강원지역총학생회장, 인천지역총학생회장, 경기지역총학생회장,
충북지역총학생회장, 대전·충남지역총학생회장, 전북지역총학생회장,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장,
제주지역총학생회장, 대구·경북지역총학생회장, 경남지역총학생회장, 부산지역총학생회장,
울산지역총학생회장.

다. 전국총학생회의 중앙집행국 국장 및 부장

라. 13개 지역 동아리연합회장

마. 13개 지역총학생회의 부회장단 2인 이하, 서울지역 학과 부회장단 2인 이하.

바. 단과대학 학생회장 및 서울지역 중상위원 1인

사. 각 지역 학과 학생회장

아. 각 지역총학생회가 인정한 시·군 학생회장

② 위원의 자격은 각 조직 부회장에 한하여 위임할 수 있으나, 1인이 2개 이상의 직위로 전학 대회위원 자격이 중복될 때는 중복된 위원자격은 위임을 할 수 없으며, 하나의 직위로만 위원자격을 갖는다.

10조(의장)

전국총학생회장은 전학대회의 의장이 된다.

11조(회의 종류와 소집)

- ① 정기 회의와 임시회의를 두며,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할 수 있다.
- ② 임시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가. 전국총학생회장의 요구 또는 권한대행의 요구가 있을 때
나. 중앙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다. 전학대회 재적인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③ 의장은 전학대회 소집 10일 이전에 전학대회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12조(권한)

전학대회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① 전국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의결권
- ② 전국총학생회 수석부총학생회장 및 지역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의결권
- ③ 보궐선거권
- ④ 학생회비 결정권
- ⑤ 회칙의 개정안 의결권
- ⑥ 전국총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되었을 경우 전국총학생회장 선출권
- ⑦ 기타 전국총학생회의 주요 사항에 관한 심의 의결권

13조(의결)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4조(권한위임)

- ① 전학대회의 무산 시 중앙상임위원회에 그 권한이 위임된다.
- ②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및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절 중앙상임위원회

15조(지위)

중앙상임위원회(이하 중상위)는 전국총학생회장의 상임 의결 기구이다.

16조(구성)

중상위는 전국총학생회장, 수석부총학생회장, 지역부총학생회장, 교무부총학생회장, 실무부총학생회장, 각지역총학생회장, 단과대학학생회장4인, 서울중상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단, 단과대학학생회장4인은 미선출시 중상위 재적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서울중상위원은 서울지역총학생회 수석부총학생회장으로 한다.)

17조(의장)

전국총학생회장은 중앙상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전국총학생회장 유고 시 권한대행(수석부총학생회장,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한 권한대행의 순으로 중앙상임위원회의 의장을 대행할 수 있다.)이 중앙상임위원회의 임시 의장이 된다.

18조(회의의 종류와 소집)

- 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및 긴급회의를 둔다.
- ②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소집되며 개최 14일 이전에 의장이 소집 공고한다.
- ③ 임시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의장은 7일 이전에 소집 공고한다.
 - 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나. 중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④ 긴급회의의 소집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즉시 소집한다.

19조(업무 및 권한)

중상위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① 전국총학생회의 예산심의 의결권
- ② 전학대회 소집 요구권
- ③ 전국총학생회 산하 기구 설치 및 해체에 대한 동의권
- ④ 전국총학생회 공통 행사 및 사업에 관한 의결권
- ⑤ 전국총학생회장 및 수석부총학생회장, 지역부총학생회장의 탄핵소추권
- ⑥ 학생회칙 개정발의권
- ⑦ 전국총학생회칙의 하부규정에 대한 제정권 및 개정권
- ⑧ 전국총학생회장 및 지역대학학생회장, 단과대학학생회장 선거 소청에 관한 심의 의결권
- ⑨ 전학대회 무산 시 위임된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의결 권한
- ⑩ 중앙집행국 국장에 대한 답변 요구권
- ⑪ 지역총학생회장 중에서 전국총학생회 지역부총학생회장을 선출하는 권한
- ⑫ 전국총학생회장 탄핵 시 잔여임기가 120일 이하인 경우 중상위원 중 권한대행 선출권
- ⑬ 전국총학생회칙 유권해석 심의 및 의결권
- ⑭ 하부학생회 분쟁 조정권
- ⑮ 등록금, 기성회비에 관련하여 학교당국과의 협의 및 의결권
- ⑯ 전국총학생회장이 임명한 임명 제청한 수석, 교무, 실무부총학생회장 임원에 대한 인준권

20조(의결)

- ① 회칙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한 중상위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중상위원의 대리인은 지역대학 총학생회장이 위임한 부총학생회장으로 한다.

제3절 전국총학생회장

21조(지위 및 임기)

- ① 전국총학생회장은 전국총학생회를 대표하며 전체학생대표자대회, 중앙상임위원회, 중앙집행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장이 된다.
- ② 전국총학생회장의 임기는 당해 연도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말일로 한다.

22조(권한)

전국총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① 전국총학생회 수석, 교무, 실무부총학생회장 3인에 대한 임명제청권 및 중앙집행국 임원 임면권
- ② 전체학생대표자대회, 중앙상임위원회, 중앙집행국 회의의 소집 및 주관
- ③ 전학대회 및 중상위에서 의결된 사항 중 전국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되는 사항의 집행
- ④ 중앙상임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한 거부권
 - ㉠ 거부권은 매 학기 1회에 한한다.
 - ㉡ 거부권 행사 시 동일 안건은 재상정할 수 없다.
 - ㉢ 전국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단의 임명 제청안 부결 및 회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중앙감사위원중 전국총학생회장이지명한 1인에 대한 선임 및 교체권
- ⑥ 중앙집행국 국장급 이상 임원중 중앙선거관리위원 2인에 대한 선임권

제4절 전국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단

제23조 지위와 권한 및 자격

- ① 전국총학생회수석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서울지역총학생회장이 당연직 전국총학생회 수석부총학생회장이 되며, 중요업무 협의권을 갖는다.
- ② 전국총학생회 지역부총학생회장은 전국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총학생회장과 협의하여 각 지역별 현안에 대하여 협의권을 갖는다.
- ③ 전국총학생회 교무부총학생회장, 실무부총학생회장은 전국총학생회장 및 수석부총학생회장, 지역부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중앙집행국의 일상업무를 관장한다.
- ④ 전국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단은 전국총학생회 중앙집행국 임원 또는 지역대학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이상으로 당해 연도 포함하여 연속 4학기 이상 임원으로 등록하고, 활동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후 타 학과에 편입하여 연속으로 학적을 유지한 경우는 연속학기로 인정한다.)

24조(권한대행)

- ① 전국총학생회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궐선거전까지 수석부총학생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단, 수석부총학생회장의 유고 시 중앙상임위원회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 ② 전국총학생회장의 탄핵안에 대한 모든 회의의 의장은 수석부총학생회장이 된다.
- ③ ①의 유고란 사망 및 자격상실, 사임, 업무정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선출 확인을 말한다.

제5절 중앙집행국

25조(지위)

중앙집행국(이하 집행국)은 전국총학생회의 최고 집행 기구이다.

26조(구성)

- ①집행국은 전국총학생회장과 수석부총학생회장, 지역부총학생회장, 교무부총학생회장, 실무부총학생회장 및 10개 이하의 국으로 구성되며, 각 부서는 필요시 부원을 둘 수 있다.
- ②전국총학생회장은 필요시 중앙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국.부서를 신설.폐지 할 수 있다.

27조(업무 및 권한)

- ①집행국은 전체학생대표자대회,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 ② 집행국은 전국총학생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과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며, 중앙상임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문서는 중상위 개최 7일 전까지는 제출하여야 한다.
- ③중앙집행국 각국의 업무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절 지역총학생회

28조(조직)

지역총학생회는 광역시 및 도 단위로 조직할 수 있고, 이에 관한 내용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9조(지위 및 활동)

- ①지역총학생회는 당해 지역의 학생 자치 기구이다.
- ②지역총학생회 활동은 전국총학생회 회칙에 준하여 제정한 각 지역별 학생회칙에 따른다.
- ③각 지역운영위원회는 지역총학생회, 지역총학생회 부회장단, 각 학과 학생회장, 시.군 학습관 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 ④지역총학생회조직은 전국총학생회 중앙집행국에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⑤지역총학생회 회칙 개정 시에 전국총학생회칙을 준용하여야 하며, 전국총학생회 회칙의 "전문"의 정신 및"총칙"의 규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한다.

제7절 단과대학 학생회장

30조(조직)

- ①단과대학학생회는 인문과학대학 학생회, 사회과학대학학생회, 자연과학대학학생회, 교육과학대학 학생회로 나뉜다.
- ②각 단과대학학생회 산하에 전국학과 및 지역학과를 둔다.

31조(지위 및 활동)

- ① 단과대학학생회는 단과대학의 학습 관련 현안 업무에 대한 활동 기구이다.
- ② 각 단과대학학생회장은 임기 개시 직후 단과대학학생회 조직을 전국총학생회 중앙집행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 단과대학학생회장 미 선출시 중상위 의결을거쳐 각 학과 전국연합회장 중에 준하여 선출할 수 있다.
- ④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각 학과 연합회장 및 각 지역대학 학과회장의 직에서 사임하거나, 탄핵 등으로 현저히 단과대학 학생회장으로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단과대학 학생회장직에서 자동사임하며 중앙상임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재 정

32조(재정)

전국총학생회의 재정은 학생회비로 한다.

33조(회계연도)

- ① 전국총학생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2월 1일부터 익년도 1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본회의 재정은 매년 1학기 및 2학기로 나뉘어 집행한다.
- ③ 회계기준 1학기는 2월 1일에서 7월31일, 2학기는 8월 1일에서 익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및 학생회계 세칙의 기준을 적용한다.)
- ④ 전임학생회장은 2학기 회계마감 관련 자료정리 및 회계결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4조(학생회비 배분 및 회계책임자)

- ① 전국공통행사비 및 공통 경비(예산): 편성 예산에서 활동비를 제외한 총액(S)의 15%
- ② 서울지역추가지원비: 편성예산에서 활동비를 제외한 총액(S)의 4%
- ③ 전총회장, 수석·교무·실무부총학생회장 및 지역대학 학생회장활동비: 편성 예산총액(S)의6%.
- ④ 전총회장단: 편성 예산에서 활동비를 제외한 총액(S)의 2%
(전총회장:60,수석·교무·실무·지역부총학생회장 각10의 비율로 배분)
- ⑤ 중앙집행국:총액(S)에서①~④항목을 제외한 금액(A)의 7%
- ⑥ 서울지역: 총액(S)에서①~④항목을제외한금액(A)의19%
- ⑦ 단과대학 학생회장 활동비는 매 학기 공통 예산에서 50만 원씩 지급하고 서울 중상위원은 중상위원회의 및 전국총학생회 행사 참여 시 실비를 지급한다. (단 학기별 2회 이상 중앙상임위원회의 및 행사에 참석한 자)
- ⑧ 지역학생회배분: 잔여 금액을 전국총학생회장의 결제 후 기본경비 및 사업경비로 구분하여 배분한다.
(서울지역 제외)
- ⑨ 전국총학생회장은 당연직 전국총학생회 회계책임자가 된다.

35조(준예산)

예산안이 부득이한 사유로 매 학기 시작 30일 이내에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집행 예산의 70% 범위에 준하여 전국총학생회장이 선 집행할 수 있다.

36조(결산 보고서 작성 등)

전국총학생회장은 1학기는 8월 중, 2학기는 임기종료일 이전에 결산보고를 하고, 회계 결산자료 공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회계 결산자료로 대체한다.

각 지역대학 총학생회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회계 관련자료 일체를 전국총학생회로 보고하고, 각 지역대학 회계자료 카페 게시는 각 지역대학 회칙에 따른다.

(단, 회계관련 자료는 원본대조필 및 총학생회 직인 날인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37조(중앙감사 위원회)

- ① 전국총학생회 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을 위하여 중앙감사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활동 등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 ② 전국총학생회 중앙감사위원회는 전국총학생회장, 지역대학 총학생회장, 지역대학 감사위원의 요청 시 전국총학생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대학 총학생회 및 산하 학생회의 회계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 ③ 중앙감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및 소명 요구에 반드시 협조해야 하며, 위반 시 학생회 예산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 장 선 거

제1절 전국총학생회장

38조(선거 방법)

전국총학생회장 선거는 직접선거 또는 온라인 투표로 선출한다.

39조(피선거권)

- ① 전국총학생회장에 출마한 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중인 자로 6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하며 연속 4학기 이상 10학기까지 등록한자로 한다.
 - 나. 취득 및 인정 학점이 71학점 이상이고, 이수한 학점 평균이 2.0 이상인 자.
 - 다. 단, 편입생은 연속 4개 학기 이상 8학기까지 등록한 자로 하며 취득 및 인정 학점이 91학점 이상이고, 이수한 학점 평균이 2.0 이상인 자.
- ② 전국총학생회장에 출마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시는 출마할 수 없다.
 - 가. 지역총학생회에 입후보한 자는 출마할 수 없다.
 - 나. 전국총학생회 및 지역총학생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
 - 다.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연속으로 6학기 이상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단, 편입생은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연속으로 4학기 이상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 라.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학생회 임원으로 4학기 이상 연속하여 학교에 임원으로 등록하여 활동하지 않은 자.

40조(선거권자 및 선거 시기)

- ①선거권자는 선거 당시 등록한 재학생으로 한다.
- ②선거일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41조(당선 확정)

- ①당선자는 최다 득표자로 한다.
- ②단독 입후보하였을 경우는 찬. 반 투표로 당선을 확정한다.
- ③당선자가 결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학보 등 다수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42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선거 관련 제반 업무(후보자등록, 서류 확인, 선거유세, 당선자 확정 공고, 투.개표 관련 업무 등)를 집행한다.
- ②기타 중선관위에서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43조(보궐 선거)

- ① 보궐 선거는 전체학생대표자대회에서 실시한다.
- ② 전국총학생회장이 궐위 되거나 탄핵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3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 하여야 한다. 단, 잔여임기가 120일 이하인 경우는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한 권한대행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전체학생대표자대회 무산시 보궐 선거의 모든 사항은 중앙상임위원회에 일임된다.
- ④ ②의 궐위라 함은 사망, 파면, 자격상실, 사임을 말한다.

제2절 지역총학생회장

44조(피선거권 및 선거 절차)

- ①지역총학생회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중인 자로서 3학년 2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 나. 취득 및 인정 학점이 71학점 이상이고, 이수한 학점 평균이 2.0 이상인 자.
 - 다. 단, 3학년 편입생인 경우 취득 및 인정 학점이 91학점 이상이고, 이수한 학점 평균이 2.0 이상인 자.
- ②①항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학생회장 선거에 따른 다음 사항은 지역 회칙이 우선 적용된다.
(단, 선거 방법은 반드시 직접, 평등, 비밀, 보통 선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가. 선거권 및 피선거권
 - 나. 선거 시기
 - 다. 당선 확정
 - 라. 선거관리위원회
 - 마. 보궐 선거

제3절 단과대학학생회장

45조(피선거권)

- ① 단과대학학생회장 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중인 자로서 3학년 1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 나. 취득 및 인정 학점이 58학점 이상이고, 이수한 학점 평균이 2.0 이상인 자.
 - 다. 단, 3학년 편입생인 경우 취득 및 인정 학점이 91학점 이상이고, 이수한 학점 평균이 2.0 이상인 자.
- ② 단과대학학생회장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소속 학과 전국연합회장에 당선되어야 한다.

제5장 탄핵 및 징계

46조(탄핵)

탄핵동의안이 중앙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대행 및 권한대행은 20일 이내에 전체학생대표자대회의 개최를 공고하여 탄핵동의안을 처리하여야 하며 전체학생대표자대회개최에 관한 내용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47조(탄핵 사유)

- ① 전국총학생회장의 탄핵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가. 전체학생대표자대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반한 행동을 할 때
 - 나. 전국총학생회장의 업무를 포기하거나 기피 할 때
 - 다. 전국총학생회의 이익에 반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때
 - 라. 전국총학생회칙 36조(결산 보고서 작성 등)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 ② 지역부총학생회장의 탄핵 사유는 ①항의 당해 사항에 의한다.
- ③ 같은 사안의 탄핵소추는 1회에 한한다.

48조(탄핵 의결)

- ① 제2장 제2절 제19조⑤항의 의결 내용 중 전국총학생회장 및 지역부총학생회장의 탄핵 의결에 관한 사항은 재적인원 3/4 참석에 3/4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탄핵 의결은 전체학생대표자대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무산되었을 경우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며 탄핵동의안이 통과된 날로부터 중앙상임위원회의 의결 시까지의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49조(사퇴)

전국총학생회장 탄핵 확정 시 임명직 중앙집행국 임원은 그 직에서 자동사퇴하며 중앙집행국은 해산한다.

제6장 회칙 개정 등

50조(발의)

전국총학생회칙개정안의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전체학생대표자대회의 발의
- ②중앙상임위원회의 발의 (중앙상임위원 3/4 참석과 3/4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 ③전국총학생회장의 발의
- ④회원1,500인 이상의발의

51조(공고)

회칙 개정안에 대한 발의가 있으면 전국총학생회장은 이를 즉시 학보 등 다수의 학생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10일 이상 공고한다.

52조(의결)

- ①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10일 이후 20일 이내에 전체학생대표자대회에서 의결한다.
- ②①항의 무산 시 중앙상임위원 $2/3$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회칙 개정안에 대한 중앙상임위원회의 의결 시까지의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④중앙상임위원회의 의결은 개정안을 일괄 상정 후 처리하여야 하며, 수정 의결은 불가능하다.

53조(공포)

- ①개정이 확정된 회칙은 전국총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 ②미공포 시 의결로부터 10일이 경과 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54조(회칙의 해석)

- ①본 회칙의 해석에 의견대립 및 회칙 외의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중앙상임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 ②지역총학생회에서 회칙 유권해석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국총학생회칙에 준한다.

55조(시행세칙)

- ①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세칙을 둔다.
- ②시행세칙의 개정은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한다.

1조(효력 발생)

본 회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조(경과조치)

본 회칙 공포 이전에 이미 시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은 본 회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3조(제정 및 개정 일자)

1982년 07월 01일 학우회칙제정

1983년 11월 01일 제1차 학우회칙개정

1984년 08월 28일 제2차 학우회칙개정

1986년 01월 29일 제3차 학우회칙개정

1986년 09월 01일 제4차 학우회칙개정

1987년 09월 22일 제5차 학우회칙개정

1987년 12월 10일 제6차 학우회칙개정

1987년 11월 23일 학생회칙제정

1992년 05월 23일 제1차 학생회칙개정

1992년 11월 22일 제2차 학생회칙개정

1993년 09월 20일 제3차 학생회칙개정

1995년 01월 08일 제4차 학생회칙개정

1996년 10월 08일 제5차 학생회칙개정

1998년 10월 15일 제6차 학생회칙개정

2000년 02월 12일 제7차 학생회칙개정

2000년 11월 07일 제8차 학생회칙개정

2001년 10월 10일 제9차 학생회칙개정

2002년 10월 29일 제10차 학생회칙개정

2004년 10월 30일 제11차 학생회칙개정

2005년 02월 21일 제12차 학생회칙개정

2005년 10월 28일 제13차 학생회칙개정

2009년 04월 12일 제14차 학생회칙개정

2010년 08월 06일 제15차 학생회칙개정

2011년 12월 03일 제16차 학생회칙개정

2023년 10월 17일 제17차 학생회칙개정

2024년 12월 30일 제18차 학생회칙개정

2025년 11월 07일 제19차 학생회칙개정(2026년 2월 1일부터 효력 발생)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1조(위치)

전국총학생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본부에 두고 학우들의 권익 보호와 편의 제공을 위해 서울지역총학생회는 서울지역대학, 인천지역총학생회는 인천지역대학, 경기지역총학생회는 경기지역대학, 강원지역총학생회는 강원지역대학, 대전·충남지역총학생회는 대전·충남지역대학, 충북지역총학생회는 충북지역대학, 전북지역총학생회는 전북지역대학,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는 광주·전남지역대학, 대구·경북지역총학생회는 대구·경북지역대학, 경남지역총학생회는 경남지역대학, 부산지역총학생회는 부산지역대학, 제주지역총학생회는 제주지역대학, 울산지역총학생회는 울산지역대학에 사무실을 운영한다.

2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학생회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회칙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하고자 한다.

3조(단체 및 회원의 징계)

①【단체(장)】

학생회의 조직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 집행 계통 및 절차를 무시하거나 중앙상임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일방적으로 반하는 사업 및 행위를 하였을 시 해당 학생회 및 단체(장)에 대하여 전국총학생회장은 직권으로 업무 정지권 및 예산집행 정지권을 발동하고, 추후 중앙상임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또한 위 사항에 대하여 중앙상임위원회의 의결로 발동할 수 있다.

②【회원】

회원에 대한 자격의 정지 및 제한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소속 지역학생회에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해명의 기회를 주고 해당 지역학생회에서 징계한다.

③징계의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

- 가. 전국총학생회의 명예에 손상이 가는 행위를 하거나 대외 단체에 동참한 자.
- 나. 전국총학생회의 기밀에 관한 문서나 정보를 학생회 외부로 유출한 자.
- 다. 타 회원에게 학생회비 납부 거부를 종용한 자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기타 사안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있다.
- 라.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온라인, 통신매체 등에 유포하는 등 분란 및 내분을 조장한 자.
- 마. 전체학생대표자대회, 중앙상임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
- 바. 학내의 재물을 고의적으로 손괴한 자.
- 사. 성적 희롱이나 추행 및 폭행을 한 자.
- 아. 학생회 임원을 사칭한 자, 학생회 임원을 사칭하여 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자.

④통신상의 윤리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된 자는 징계할 수 있다.

- 가. 근거 없는 내용으로 개인이나 학교와 학생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 나. 불건전한 내용으로 남에게 혐오를 준 자.

제2장 기구와 권한

제1절 전체학생 대표자 대회

4조(재적인원)

- ①전체학생 대표자대회 재적인원은 본칙 9조(구성)①의 자로 전학대회 전 사전에 등록한자로 한정한다.
- ②지역총학생회에서 인정한 시·군 학습관 학생회장
- ③중앙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지역총학생회장
- ④1인이 2개 이상의 직위로 전체학생대표자대회 위원자격이 중복 될때에는 중복된 위원자격은 위임을 할 수 없으며, 하나의 직위로써만 위원자격을 갖는다.

5조(회의 등)

- ①전체학생대표자대회 준비는 각 지역총학생회의 도움을 받아 중앙집행국에서 한다.
- ②회의의 준비 및 회의 개최 비용 일체는 전국총학생회의 공통 경비로 한다.
- ③전체학생대표자대회는 회원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안전의 특성상 방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시는 전국총학생회장단의 의결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 ④전체학생대표자대회 위원이 아닌 회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는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한 후 의장의 지명으로 발언할 수 있다.
- ⑤회의록은 전체학생대표자대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중앙집행국에서 기록 및 작성하여 전체학생대표자대회에 참석한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의 검토 확인 후 발표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단, 회의록은 차기 중앙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발송하며, 긴급한 사항일 때는 예외로 한다.)

6조(의안 상정 등)

- ①주요 의안은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으로 한다.
- ②전체학생대표자대회위원이 의안 상정을 할 때에는 전체학생대표자대회 1/3 이상 지역에서 50인 이상 연명을 받고 대표자를 정하여 그 대표자가 문서로 전체학생대표자대회 개최7일 이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2절 중앙상임위원회

7조(재적인원) 재적인원은 22인이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단, 중복된 지위는 1개만 인정한다.)

- 가. 전국총학생회장1인
 - 나. 수석부총학생회장1인
 - 다. 지역부총학생회장1인
 - 라. 각지역총학생회장12인(지역부총학생회장은 지역총학생회장 인원에서 제외)
 - 마. 교무부총학생회장1인
 - 바. 실무부총학생회장1인
 - 사. 단과대학학생회장4인
 - 아.서울지역중상위원1인
- (단,서울지역 중상위원은 서울지역 총학생회 수석부총학생회장으로 한다.)

8조(회의)

- ①회의 개최 공고 시, 의장은 각 안건을 중앙상임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회의 준비는 중앙집행국에서 하며, 지역총학생회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 ③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앙집행국 임원 중 2개국을 통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며, 지명된 2개국 국장은 중상위 동의로 발언권이 있으며 회의와 관련된 업무를 보조한다.
- ④회의 준비 등 회의와 관련된 비용은 중앙집행국 예산으로 한다.
- ⑤회원이 방청하고자 할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없다.(단, 회의의 공개 여부는 중앙상임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 ⑥중앙상임위원회는 중앙상임위원 중 대변인.부대변인을 각 1인씩을 둘 수 있다.
- ⑦중앙상임위원의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 시에는 해당 중앙상임위원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성원 보고 시 이 사실을 위임장과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 ⑧중앙상임위원회는 당해 연도 전국총학생회장 선거방식을 의결한다.
- ⑨중대사안의 발생 시에는 중앙집행국이 선조치하고 10일 이내에 중앙상임위원회를 개최 하여 추인을 받는다.(단, 중상위의 추인을 받지 못할 시는 효력을 잃는다.)

제3절 전국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단

9조(업무및 권한)

- ①전국총학생회 수석부총학생회장, 교무부총학생회장, 실무부총학생회장은 각종 사업의 실무집행자로서의 권한과 중앙집행국의 구성시 임원 제청권을 갖는다.
- ②수석부총학생회장 및 지역부총학생회장은 중요 사안에 대하여 전국총학생회장과 협의권을 갖는다.

제4절 중앙집행국

10조(부서 및 업무)

- ①정책국:전국총학생회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 및 기획 업무
- ②사무국:전국총학생회의 모든 서무 및 회계업무
- ③학습국:회원의 학습에 관한 자료수집 및 연구
- ④대외협력국:대외 단체와의 연대업무 및 각 지역총학생회와의 연대업무
- ⑤인권국: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 및 학생회 회원의 인권 보호에 관한 제반 업무
- ⑥문화홍보국:전국총학생회 및 지역총학생회 문화.체육행사에 관한 기획, 진행, 홍보업무
- ⑦편집국:전국총학생회 행사 인쇄물 제작 및 발간, 배포의 업무
- ⑧복지국: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 및 학생회회원에 대한 인권 및 후생 복지 업무
- ⑨청년국:청년회원 상호간의 협력 및 학사 편의 제공 및 민원에 관한 제반 업무
- ⑩ 정보통신국: 본교 홈페이지 올바른 게시판 문화 정착에 관한 업무 및 전국총학생회 온라인 홈페이지 관리

11조(회의)

- ① 중앙집행국의 모든 의사 결정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기회의, 임시회의, 기타 회의를 둔다.
 - 가. 정기회의는 매 분기별 1회로 한다.
 - 나. 임시회의는 전국총학생회장, 전국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및 집행국 국장 3인 이상의 요구나 집행국 임원 $\frac{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한다.
 - 다. 기타 회의는 전국총학생회장의 요구에 의하여 국장단 회의, 국장의 요구에 의하여 국별 회의를 둔다.

제5절 지역총학생회

12조(조직)

지역총학생회는 지역대학 내에 두며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인정된 학생회로 한다.

제6절 단과대학학생회

13조(선출)

- ① 단과대학 학생회장 선거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학기 개시 45일 이내 선출한다.
- ② 기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 ③ 단과대학 학생회장 선거 공고 및 선거일 당시 학과별 연합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학과는 단과대학 학생회장 선거 입후보 및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추후 단과대학 학생회장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장 재 정

22조(예산)

학생회비 인상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중앙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학교 당국에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23조(예산집행 및 관리)

- ① 전국공통 행사비 및 공통 경비(예산): 편성 예산에서 활동비를 제외한 총액(S)의 15%
- ② 서울지역추가지원비: 편성 예산에서 활동비를 제외한 총액(S)의 4%
- ③ 전총회장, 수석·교무·실무부총학생회장 및 지역대학학생회장활동비: 편성 예산총액(S)의 6%
- ④ 전총회장단: 편성 예산에서 활동비를 제외한 총액(S)의 2%
(전총회장: 60, 수석·교무·실무·지역부총학생회장 각 10의 비율로 배분)
- ⑤ 중앙집행국: 총액(S)에서 ①~④ 항목을 제외한 금액(A)의 7%
- ⑥ 서울지역: 총액(S)에서 ①~④ 항목을 제외한 금액(A)의 19%
- ⑦ 단과대학 학생회장 활동비는 매 학기 공통 예산에서 50만 원씩 지급하고, 서울중앙위원회는 중앙상임위원회의 및 전국총학생회 행사 참여 시 실비로 지급한다. (단 학기별 2회 이상 중앙상임위원회의 및 행사에 참석한 자)

- ⑧지역학생회배분:잔여 금액을 전국총학생회장의 결제 후 기본경비 및 사업경비로 구분하여 배분한다.
(서울지역 제외)
- ⑨전국총학생회장은 당연직 전국총학생회 회계책임자가 된다.

24조(결산)

각 지역별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25조(중앙감사위원회)

- ①감사위원은 3인으로 구성하며, 중앙상임위원회 의결로 2인을 선출하고, 1인은 전국총학생회장이 선임하며 임명직 부회장은 제외한다.
(단,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3인중 중앙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 ②감사위원은 매 학기 초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한 학기로 하며, 감사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 ③감사에 소요 되는 비용은 중앙집행국 예산에서 지출한다.
- ④감사위원장의 감사 결과 보고는 감사 후 중앙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각 지역총학생회 회계 감사는 해당 감사위원회에 일임하고, 감사 후 감사보고서를 중앙감사위원회에 제출한다.
- ⑥중앙감사위원회는 각 지역감사위원회에 자료를 보완.요구 및 재 감사할 수 있다.
(단, 감사 실시 전 전국총학생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⑦감사는 회계 감사로 한다.
- ⑧감사는 정기감사와 임시감사로 구분한다.
가. 정기감사:1학기는 당해 연도 8월 중, 2학기는 익연도 1월 중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임시감사:사안에 따라 중앙감사위원회의 요구로 실시하며, 피감사기관은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한다.
- ⑨전국총학생회장 입후보자는 2학기 감사위원을 할 수 없다.

제4장 산 하 기 구

26조(회칙 신고 및 집행부 등록)

- ①지역총학생회는 회칙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신고된 회칙에 의하여 구성된 조직의 대표와 집행부의 신상 연락 방법 등의 이력과 함께 집행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27조(운영)

- ①지역총학생회는 당해 지역의 총괄 자치 기구이며, 그 산하에 학과 학생회 및 시.군 학생회 등의 자치 조직을 지역 특성에 맞게 설치할 수 있으며, 학생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 ②단과대학학생회는 학과 학생회를 두고 그 산하에 지역학과 학생회를 둔다.
- ③각 지역동아리 연합은 산하에 단위 동아리를 둔다.

제5장 선거 관리

제1절 목 적

28조(목적)

후보자에게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정당한 정책대결을 유도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제2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9조(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의 구성은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선거공고일 10일 이전에 구성한다.

30조(자격)

전국총학생회장은 중선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중상위원 4인, 중앙집행국 부총학생회장 1인, 중앙집행국 임명직 국장급 이상 1인으로 선거공고 10일 이전에 구성한다.

31조(업무 및 권한)

중선관위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권한을 갖는다.

- ① 후보자의 등록 및 접수
- ② 선거 지휘 및 감독
- ③ 후보자에 대한 징계권
- ④ 후보자의 자격심사
- ⑤ 사무장 및 참관인자격 정지권
- ⑥ 후보자사무실을 불 시 방문하여 불법 선거홍보물 및 유인물 수거권
- ⑦ 선거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권
(단, 후보 자격 박탈 등 중대사안에 대하여는 중앙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⑧ 각 지역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단, 선거사무원은 각 지역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 중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자로 지역대학별로 1인을 둔다.)

32조(자격 상실)

- ① 선거관리위원이 후보 등록을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위원자격이 상실된다.
- ②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사무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 시 선거관리위원 자격을 즉시 박탈한다.

33조(위원장 권한)

- ①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위원장은 각 후보 간의 조율을 할 수 있다.
- ③필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다.
- ④선거관리위원의 자격 정지, 자격 박탈 및 교체 권한
(단, 중앙선거관위원 교체는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 ⑤기타 제반 업무

제3절 전국총학생회장 선거 관리

34조(선거 관리 규정)

중앙선거에 관한 모든 제반 사항은 전국총학생회 선거 관리 규정을 따른다.

제6장 회 칙 개 정

41조(회칙 개정 절차)

- ①개정 발의
- ②회칙 개정 소위원회 구성
- ③소위원회 개정안 성안
- ④중앙상임위원회 심의
- ⑤개정안 발의 공고
- ⑥전체학생대표자대회 의결
- ⑦전체학생대표자대회 무산 시 중앙상임위원회에 일괄 상정 의결
- ⑧공포

1조(효력 발생)

본 시행세칙은 공포 즉시 효력을 가진다.

2조(통상관례)

시행세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 통상 관례에 따른다.

3조(제정 및 개정 일자)

1998년 11월 10일 개정

2000년 2월 12일 개정

2000년 11월 7일 개정

2001년 10월 9일 개정

2002년 10월 29일 개정

2004년 10월 30일 개정

2005년 2월 21일 개정

2005년 10월 14일 개정

2009년 04월 12일 개정

2010년 08월 06일 개정

2011년 12월 03일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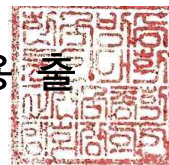
2023년 10월 17일 개정

2024년 12월 30일 개정

2025년 11월 07일 개정(2026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5년 11월 07일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국총학생회장 김 용



전국총학생회 선거관리 규정

전국총학생회칙에 의거 하여 2025년 11월 07일에 개정한 전국총학생회
선거관리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 아 래 ---

전국총학생회 선거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2장 선거 운동

제3장 징계 및 의결

제4장 보궐 선거

제5장 지역총학생회장 선거

제6장 단과대학회장 선거

전국총학생회 선거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선거의 원칙)

- ① 선거는 전국총학생회의 사업을 거요적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미래지향적인 자치 기구로서 학우들이 학생회의 주인으로 확립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회원은 선거를 민주적으로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선거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라 한다.)는 중선관위 구성 후 선거 30일 이전에 선거 일정 및 입후보자등록을 공고하여야 한다.(중선관위 구성공고 후 5일 이내에 선거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후보 등록 및 구비서류)

후보자는 선거공고 후 1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후보자등록 시 각 항의 서류를 중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기탁금 및 선거홍보물 비용은 당해 중선관위에서 결정한다.
- ② 입후보자등록(중선관위 소정 양식)
- ③ 성적증명서(학교 당국 발행)
- ④ 출마 선언서(200자 원고지 15매 이내) 선거 공약서 및 이력서
- ⑤ 단독후보 입후보 시 7개 지역대학 이상, 16개 학과 이상, 지역대학당 50인 이상 총 1,000명 이상의 추천서 경선 시 5개 지역대학 이상, 12개 학과 이상, 지역대학당 50인 이상 총 1,000명 이상의 추천서(중복가능)
- ㉞ 경선 시 재학생의 각 후보별 중복 추천은 허용한다.
- ④ 추천서에는 추천인의 성명, 지역대학, 학과, 학번 및 자필서명을 반드시 기입 한다.

(단 대필은 허용하지 않는다.)

- ⑥ 기탁금 납입증명서(중선관위 소정 양식)
- ⑦ 명함판 사진 4매(3개월 이내 촬영, 3×4cm), 원본 파일 제출
- ⑧ 포스터용 사진 1매(11×14인치), 원본 파일 제출
- ⑨ 대리인(이하 선거사무장)의 등록 서류 및 재학증명서 각 1부
- ⑩ 투.개표 참관인의 재학증명서 각 1부
- ⑪ 입후보자 학생회비납부증명서(전체학년 및 연속학기 납입증명서)
- ⑫ 선거운동원 등록 명부(30명 이내 또는 중선관위의 결정 사항에 따름)
- ⑬ 선거운동원 재학증명서 각 1부(학교 당국 발행)
- ⑭ 선거홍보물(포스터 및 명함 등) 디자인 시안(원본 제출)

제4조(입후보자 심사)

- ① 중선관위는 후보 등록 마감 후 3일 이내에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한다.
(단, 전국총학생회칙 제42조의 규정에 어긋남이 있을 때는 중선관위의 결정으로 후보 등록을 거부한다.)
- ② 입후보자가 구비서류를 등록 마감 시간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중선관위의 결정으로 등록을 거부한다.

제5조(입후보자 최종 등록)

- 중선관위는 등록 시간 마감 3일 이내에 입후보자 최종 등록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하고, 입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경선 시에는 입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필히 참석하고 불참 시 중선관위는 최종후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① 최종 등록 결정과 경선 시 기호 추천
 - ② 선거 규정 배포 및 안내
 - ③ 이외의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

제6조(결격사유)

- 전국총학생회장 및 지역대학총학생회장, 단과대학총학생회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규정에 해당 되면 출마의 제한 또는 금지, 선거서류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①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신용불량자 또는 파산, 면책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되거나, 집행이 면제 또는 사면, 복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⑤ 선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전국총학생회 및 지역총학생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
 - ⑥ 학교 또는 학생회의 징계를 받고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⑦ 학교 또는 학생회의 징계를 받고 임원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 정지 기간중에 있는 자
 - ⑧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⑨ 학생회 임원으로 당해 연도 포함 연속 4학기 이상 학교에 등록하여 활동하지 아니한 자
 - ⑩ 제6조①~⑨호까지의 확인을 위하여 출마자 및 후보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단, 중선관위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하여 출마자 및 후보자가 거부할 시 출마서류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출마자 및 후보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제2장 선거 운동

제7조(선거 운동 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중선관위의 입후보자 최종 등록 공고 직후부터 투표일 전날 24시까지로 한다.

제8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① 중선관위원은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② 위①항의 규정을 어길 경우 해당 중선관위원 및 중앙상임위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 ③선거운동원은 선거 기간 현재 등록 중인 재학생만 등록할 수 있다.
- ④선거운동원 미등록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⑤지역총학생회장에게 출마하거나 출마하려는 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원 등록을 할 수 없다.

제9조(선거유세 및 유인물)

선거유세는 개인 유세와 합동 유세로 나누고 기간은 선거운동 기간에 준하여 소견문, 포스터 기타 홍보물(명함)은 선관위 공영제로 한다.

- ①선거유세
 - ㉠ 선거유세는 단독 입후보 출마일 경우라도 연설회를 가져야하며, 후보자의 사정에의해 유세를 진행할 수 없을 시 후보자가 지명하고 중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장을 통하여 유세를 대신할 수 있다.
 - ㉡ 선거운동 기간 및 유세 중 선물, 금품 및 향응 제공 등은 일체 할 수 없다.
- ②유인물
 - ㉠ 모든 선거 관련 유인물은 종류를 불문하고 중선관위의 사전 허가를 거친 후 제작 및 배포하여야 하며 배포 시 후보의 이름을 밝히고 배포한다.
 - ㉡ 선거 현수막 및 포스터는 중선관위에서 지정한 크기와 양식만으로 제작할 수 있다.
 - ㉢ 지역 및 시·군·학습관 선거 현수막 및 포스터의 크기는 중선관위에서 지정한 사항을 따른다.
 - ㉣ 선거 현수막은 대학본부 1개, 서울지역 3개, 각 지역대학당 1개를 게시할 수 있다.
 - ㉤ 포스터는 지역총학생회장 책임하에 지역 및 시·군 학생회 게시판에 일괄 부착하여야 한다.
 - ㉥ 각 지역대학 및 시·군 학생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유인물의 게시 및 부착을 할 수 없다.
 - ㉦ 학교의 업무나 학우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 유인물을 게시 및 부착할 수 없다.

제10조(합동 공청회)

- ①합동 공청회는 중선관위의 책임하에 민주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 ②후보자는 합동공청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합동공청회 10분 전까지 입장하여야 한다.
- ③합동 공청회의 소견 발표는 참석자의 질의, 응답으로 규정된다.
- ④합동 공청회의 질의자는 중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11조(기탁금 및 회계)

- ①기탁금은 당해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선거비용을 제외한 기탁금 잔액은 전국총학생회 예산으로 귀속한다.
- ③중선관위 회계책임자는 선거 종료 후 선거비용 회계자료를 중앙상임위에 보고한다.

제12조(선거사무장의 자격 및 권리)

- ①선거사무장은 등록한 재학생인자로 한다.
 - ②선거사무장은 후보를 대리하여 선거 관련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 ③이의 신청은 선거사무장만이 할 수 있다.
- (단, 구두, 유·무선통신 등 기타의 방법으로 제기된 이의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24시간 이내에 중선관위에 제출하고, 접수 완료 시점부터 이의 신청의 효력을 인정한다.)

제13조(선거참관인의 자격·의무·권한)

- 참관인은 각 항에 의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①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리하여 투.개표장에 참관할 수 있다.
 - ②참관인은 등록된 재학생으로 한다.
 - ③참관인은 투표 7일 이전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참관인은 투.개표장에서 부정이 있을 시 중선거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참관인의 변동이 있을 때 에는 투표일 2일 전 18:00까지 중선거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선거사무장 및 참관인의 자격 정지)

투.개표장에서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된다.
(단, 선거사무장 및 참관인의 자격이 정지될경우 그 책임은 각 후보자에게 귀속된다.)

제15조(참관인의 부정행위)

- ①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②참관인이 부정행위를 할 때는 중선거위의 결정으로 해당 참관인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③참관인이 부정행위를 할 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 ㉡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해당 중선거위가 부정행위라고 결정한 행위

제16조(개표)

- ①개표 시간은 투표 마감 후 2시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②개표는 중선거위원회만이 할 수 있다.
- ③표의 유효·무효 및 특정 후보 지지의 기준은 해당 중선거위가 정한다.

제17조(개표소)

- ①개표장은 학교 내의 공개된 장소로 선거위가 정한다.
- ②후보자는 개표 시간 30분 전에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개표가 종료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
- ③개표는 해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개표 참관인만이 할 수 있다.

제18조(개표 절차)

- 개표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 ①투표인 수 확인
 - ②개표
 - ③개표 참관인의 재확인 및 투표 결과 확인
 - ④현황판 기재

제19조(이의제기)

- ①투.개표시 참관인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입회 아래 각 후보 참관인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표 및 개표를 중단한다.
- ②투.개표소에서의 이의제기는 참관인만이 할 수 있으며, 참관인 결정 사항에 대해서 후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③이미 합의 및 결정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④ 당선자 발표 후 이의제기는 각 후보와 선거사무장만이 할 수 있다.
- ⑤ 이의제기는 투·개표소에서 즉시 하여야 하고 당선 또는 결정 공고 후에는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이의 신청 접수 시간은 매일 18시까지로 한다.)

제20조(당선의 기준)

- ① 경선 시 투·개표 후 최다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한 것으로 하며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단, 가부 동수일 때는 성적순【학점, 평점순】으로 결정한다.)
- ② 단독 입후보 시 찬반투표는 찬성표가 다수일 때 당선을 공포한다.
단, 단독후보자의 개표 결과가 찬성과 반대 동수일 때는 낙선한 것으로 한다.
- ③ 후보자의 낙선으로 인한 선거무효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산하며, 전국총학생회장 선출에 관한 모든 권한은 중앙상임위원회로 위임되어 중앙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당선공고)

- ① 개표 결과가 최종 확인된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할 때부터 24시간 동안 이의 신청을 받는다.
- ②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는 중선거위를 즉시 소집하여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의결은 중선거위의 재적인원 $\frac{2}{3}$ 이상 참석하여 $\frac{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중선거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과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긴급 중앙상임위원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적 $\frac{2}{3}$ 이상 참석하여 $\frac{1}{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 한다)

제22조(당선공고)

이의 신청 기간 동안 이의제기가 없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즉시 당선 확정을 공고한다.

제3장 징 계 및 의 결

제23조(징계)

징계라 함은 전국총학생회 회칙 및 선거 규정 각 조항에 어긋나는 행위와 중선거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후보자에게 재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및 의결에 의한 주요 징계 사유는 아래와 같다.

- ① 금품 살포 및 향응
- ② 상대 후보자에 대한 흑색 비방(유언비어 유포,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선거방해
- ③ 불법 유인물 작성 및 배포(중선거위 미승인 유인물 및 홍보물 포함)
- ④ 상대 후보자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이의 신청 시
- ⑤ 기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 및 결정에 준한다.

제24조(징계의 종류)

- ①징계는 시정 명령, 주의, 경고로 나누며, 시정 명령 3회는 주의 1회, 주의 3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하고, 경고 누적 3회 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
(단, 경고 3회에 의한 후보자 자격 박탈 등의 중대 사항은 중앙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시정 명령, 주의, 경고는 사건에 따라 강도를 달리하되, 필요시 바로 경고를 줄 수 있다.
- ③전국총학생회칙 및 선거 관리규정, 그 이외의 위반으로 자격이 박탈된자는 기탁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

제25조(징계의 통보)

- ①선거 관리 규정 제2장 선거운동 제8조 위반 시는 증거 확인 후 즉시 징계를 줄 수 있다.
- ②시정 명령과 주의는 해당 후보에게 게시 및 문서로 통보하며 경고는 통보와 함께 이를 공고한다.
- ③시정 명령이나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후보가 이를 즉시 시정하지 아니하면 해당 후보에게 경고를 1회 줄 수 있다.

제26조(의결)

전국총학생회선거와 관련한 모든 사항의 의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선거관위원 재적의 과반이상 참석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7조(징계의 유보 및 재심의)

후보가 경고 3회로 인하여 후보 자격이 박탈된 상황이 된 경우에는 중앙상임위원회 재적의 2/3이상 찬성으로 1차에 한하여 징계를 유보할 수 있다.

제28조(유권해석 및 결정)

- ①본 규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유권해석은 중선거관이 결정한다.
- ②본 회칙 및 선거관리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 민주적 관례에 따라 중선거관이 결정 한다.
- ③중선거관의 유권해석 및 공정성의 문제가 있을 시, 본 회칙 소원을 중앙상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회칙소원 요청서를 받은 시간으로부터 24시간 내에 긴급중상위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중앙상임위원회는 상정된 소원의 안건을 개회 24시간 내에 심의 의결하고 최종결정된 사항은 공고 및 중선거관위와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 ⑤최종결정은 중상위의 의결에 따르며, 최종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장 보 궐 선 거

제29조(보궐 선거)

전국총학생회장이 궐위, 자격상실, 탄핵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경우 전국총학생회장의 잔여임기가 120일 이상인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 하여야 한다.
단, 전국총학생회장의 궐위 시 잔여임기가 1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수석부총학생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전국총학생회장의 자격상실 및 탄핵 시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한 권한대행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①보궐선거의 실시 여부는 중앙상임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단, 사유 발생일 현재 잔여임기가 120일 이하인 경우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② 궐위라함은 사망, 사임, 건강 악화 및 질병, 법적 분쟁(가처분 신청 인용등)에 의한 자격 정지등 현저하게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③ 보궐선거의 모든 사항은 회칙 및 선거 관리 규정의 범위 내에서 중선거위에 일임한다.
- ④ 법적 분쟁등으로 인하여 회장의 직무가 정지된 후 회장의 자격을 회복한 때에는 그, 즉시 회장의 업무에 복귀하며, 보궐선거가 진행 중인 경우 선거를 즉시 중지한다. 또한, 보궐 선거의 효력 및 결과는 전원 무효이며, 보궐선거에 사용된 기탁금의 처리는 집행된 실사용 비용을 제외한 차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제5장 총 학생 회장 선거

제30조(지역총학생회장 선거 피선거권 및 선거 절차)

- ① 지역총학생회장 선거는 전국총학생회 선거 관리 규정 및 피선거권을 준용한다.
-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총학생회장 선거에 따른 다음 사항은 지역대학 학생회칙이 우선 적용된다.
 - ㉠ 선거권 및 피선거권
 -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의 시기, 선거의 방법
 - ㉢ 선거 제반에 대한 모든 사항(후보 등록, 비 서류, 선거운동, 투표, 개표, 당선, 징계 등)
 - ㉣ 선거진행 중 발생한 분쟁 및 제반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중선거위에 요청할 수 있다.
- ③ 지역총학생회장 선거와 전국총학생회장 선거가 동시에 온라인 투표로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대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비용에 대한 지원 및 부담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비용을 납부한다.
(단, 동시 온라인 투표를 원하지 않는 지역대학은 별도로 선거를 진행할 수 있으나 선거에 대한 방법 및 모든 사항은 반드시 직접, 평등, 비밀, 보통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제6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선거

제31조(피선거권)

단과대학학생회장 후보자는 전국총학생회 선거 관리 규정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후보 등록일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중인 자로서 3학년 1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재학생은 취득 및 인정 학점이 58학점 이상이고, 이수한 학점 평균이 2.0 이상인 자.
- ③ 3학년 편입생인 경우 취득 및 인정 학점이 91학점 이상, 이수한 학점 평균이 2.0 이상인 자.
- ④ 단과대학학생회장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소속 학과 전국연합회장에 당선되어야 한다.
- ⑤ 단과대학 학생회장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등록한 모든 학기의 학생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중앙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학생회비 납부 기간에 대한 예외를 둘 수 있다.)

제32조(선거권)

단과대학 학생회장의 선거권은 각 학과 별 전국연합회장에게 있으며, 위임할 수 없다.

제3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선출 및 구성)

- ① 중앙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모든 제반 업무를 관장 한다.
- ② 중앙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관리위원의 선출은 임기 개시 후 45일 이내에 구성 및 선출한다.
- ③ 선관위 직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사용한다.
- ④ 중앙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전국총학생회장이 된다.
- ⑤ 선관위의 구성은 선거관리위원장, 중앙상임위원 2인 및 전국총학생회장이 지명한 임명직 부총학생회장 1인, 중앙집행국 국장 1인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한다.
- ⑥ 선거에 대한 제반 사항은 전국총학생회 선거 관리 규정에 따라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34조(선거공고 및 등록)

- ① 선관위 구성 후 5일 이내에 선관위 구성 및 선거 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단과대학학생회장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공고 후 1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입후보자는 각 항의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 기탁금은 당해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 ㉡ 입후보자등록(선관위 소정 양식)
 - ㉢ 성적증명서(학교 당국 발행)
- ⑤ 출마 선언서(200자 원고지 15매 이내), 선거 공약서 및 이력서
 - ㉠ 명함판 사진 2매(원본 파일 제출)
 - ㉡ 재학증명서(학교 당국 발행)
 - ㉢ 학생회비 납입증명서(학교 당국 발행)
 - ㉣ 후보와 동일한 학과 6개 지역 이상 학과 회장 추천서(성명, 학번, 연락처, 자필서명) (단, 추천서는 사진 및 문서 파일로 대신할 수 있다.)
 - ㉤ 투, 개표 참관인 1인의 재학증명서(학교 당국 발행)
 - ㉥ 기타 서류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선거 방법 및 선거운동)

- ① 선거는 소속 단과대학 학과별 전국연합 회장단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간접 선거로 한다. (단, 선거에 대한 사항 및 선출 방법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②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접수 마감 직후부터 할 수 있다.

제36조(투, 개표 절차)

투, 개표 절차는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37조(당선공고)

당선은 최대 득표자를 당선으로 하여 학교 전체 학생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단독후보자의 찬반 투표 시 찬반이 동수일 경우 후보자는 낙선한 것으로 선거는 무효가 되며 경선 후보자의 선거 결과 동점 시 학점의 평점, 평균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부칙

- ① 본 규정은 2026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② 2024년 12월 30일 전국총학생회 선거관리 규정 일부 개정
- ③ 2025년 11월 07일 전국총학생회 선거관리 규정 일부 개정
- ④ 본회의 회칙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은 개정된 전국총학생회 회칙과 방송대 학칙에 따른다.

2025년 11월 07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국총학생회장 김

